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 확대〉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3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 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인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를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로 변경·추가하는 한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교통비를 사용 용도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u>	<u>4.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u>인건비</u>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6. ----- ---- <u>인건비, 교통비</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현행법에 따라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이 있으며,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해진 비용으로 2004년 신설되었고, 이후 개정을 통해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100분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여성정치발전비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을 위한 선거관계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으로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용은 제한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위축 및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¹⁾이 있으며, 특히 각 정당에서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생물학적 성(sex)뿐 아니라 사회적 성별(gender)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³⁾으로 변경하는 한편,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와 교통비를 사용 용도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 시각적·체험적 요소를 접목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거리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참여의 제약을 완화하여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성별(gender)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여성 외

1) 연합뉴스,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운용 부실...인건비에 쓰거나 집행 저조, 2023.7.3. 등

2) 개정안의 제안이유

3) 생물학적 성(sex) 뿐만아니라 사회적 성별(gender)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모든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평등 보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성·여성 외에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고려함.

의 사회적 성별(gender)⁴⁾까지 포함된다면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 모호해져 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그 밖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법적·행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진 반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장적·추상적이어서 적용 대상이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례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를 사용 용도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이나 후보자 발굴 등에 비해 정치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용도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될 경우, 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적절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항목별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교통비”를 사용 용도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 정치인 및 정치 참여 희망자들의 활동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비는 일반 운영경비 성격

4) 여성을 포함하되, 여성 이외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트랜스젠더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이 강한 항목으로, 정치교육이나 후보자 발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활동과의 연계성이 다소 낮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용도에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문화 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에 교통비를 추가하여 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